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기획재정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(제5조)

-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
- 위원의 3인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나. 심의회 심의사항(제9조)

-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
-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

다. 심의회 운영(제10조)

-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